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8호로 2014년 4월 8일 고기관 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공유(共有)”가 주목받고 있음.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경제가 자원고갈, 이윤창출, 경쟁, 과잉소비를 유발시켰다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공유를 기반으로 자원절약, 가치창출, 신뢰,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

이 조례는 내가 가진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공유영역 발굴, 지원, 인식확산 등 공유정책을 적극 추진(안 제5조)
- 다.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안 제8조)
-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마.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안 제11조)

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및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공유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단체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유’와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12.12.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37개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운영중에 있음,
 - 지정조건 : 공유를 통해 경제,복지,문화,환경,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기업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